

증여세의 과세 방법

이진웅 <공인 회계사>

지난 호에서는 증여세의 과세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증여세의 계산 방법, 증여세에 대한 세무서의 조사 방법과 그 대비책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증여재산의 평가

증여세 과세 대상인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속재산의 평가와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2. 과세 표준

증여세 과세 표준은 증여재산의 평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를 한 금액이다.

증여재산 공제 금액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때는 1백만원×결혼년수+1천5백만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이며, 그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이다.

여기서 친족이라 함은 수증자의 직계존비속인 혈족과 출가녀인 경우에는 친가의 직계존속, 시가의 직계비속을 말한다.

증여재산 공제는 5년에 한번씩 적용받을 수 있다.

3. 세율

증여세액은 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면 증여세 과세 표준이 1억원인 경우 : 증여세액은 1억원×35% - 1천만원 즉, 2천5백만원이 된다.

<표 1> 과세 표준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천만원 이하	15%	
9천만원 이하	25%	1백만원
2억5천만원 이하	35%	1천만원
5억원 이하	45%	3천5백만원
5억원 초과	60%	1억1천만원

4. 신고와 납부

증여세에 관한 신고와 납부는 상속세의 규정을 준용한다.

즉, 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 후 6개월이며 이 기간내에 신고를 하면 내야 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고, 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되게 신고하면 20%의 가산세를 더 물게 된다.

증여세는 5년간 동일한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이 경우 5년간에 걸쳐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의 산출세액을 구하고 미리 납부한 증여세액은 여기서 공제한다.

증여세의 소관 세무서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이다. 그러나 수증자의 주소가 국내가 아니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증여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를 소관 세무서로 한다.

5. 증여세의 조사 - 자금출처 조사

일반적으로 증여는 부자간, 부부간 또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이루어지며 증여세는 이런

증여가 정당한 대가의 지급없이 이루어져야 과세되므로 세무서에서 이 사실을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미성년자, 부녀자 등 그 자금 능력이 의심스러운 사람이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취득하였을 때 세무서에서 이 취득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과세된다.

증여세의 조사는 세무서에서 조사요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직접 조사와 우편으로 자금 출처에 관한 질의서를 보내어 그 취득 자금을 조사하는 간접 조사가 있는데 보통의 경우 간접 조사로써 자금 출처를 확인한다.

자금 출처의 조사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국세청 전산실에서 사전 안내문을 컴퓨터로 작성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그 금액 미만의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일체의 조사가 없다. 사전 안내문이 작성되는 경우는 <표 2>와 같다.

이같은 기준에 따라 사전 안내문을 받은 취득자는 소요 자금의 출처를 안내문 뒷면의 '질의 및 회신 내용'란에 기재하여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에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우편 제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같은 자료 입증 금액이 25세 이하의 취득 자금의 90% 이상, 26세 이상은 80% 이



상이면 해당 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이렇게 재산 취득 자금에 대하여 사전 안내문(우편 질의서)을 받고 이에 대하여 회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에서는 「추가 안내서」를 보내고, 이 추가 안내서를 받고도 15일 안에 회신이 없으면 세무서에서는 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뜻을 알리는 안내문을 보내며 이

증여세 과세 안내문을 받고도 회신이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산 취득 자금으로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자금 출처를 조사받고 있는 사람 소유의 재산 매각 대금(서류에 의하여 매각 대금이 확인되면 그 금액으로 하고 매각 대금이 불분명한 경우 매각 시점 재산의 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금액)

②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의 지

급 금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

③ 사업 소득, 부동산 소득, 산림 소득은 소득 금액

④ 급여 소득은 총급여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재직기간별 급여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는 자산 취득 직전 월 또는 직전 연도의 급여액을 재직월 또는 재직년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⑤ 퇴직 소득은 총지급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⑥ 기타 소득(저술, 창작, 강연 등으로 인한 소득)은 총지급액에서 원천징수 세액을 공제한 금액

⑦ 농지경작 소득

a. 감류 농지: 기준 수확량에 의한 기준 수입금액(그 계산은 자산취득 연도 또는 그 직전 연도 수확량과 경작 기간에 따라 환산한다.)

b. 을류 농지: 그 농지에 대한 소득 금액

⑧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로서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금액(단, 원칙적으로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간의 금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채권자의 인적사항, 차용금리, 차용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거나 채권자가 해당 사채의 이자 수입에 대해 소득세 신고를 했을 때 자금 출처로 인정한다.)

⑨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

⑩ 취득 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과 보증금. ㉞

〈표2〉 재산 취득시 사전 안내문 작성 대상

취득한 사람		주택 취득시	기타 자산 취득시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	1억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40세 이상	3억원 이상	1억원 이상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이상 여자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30세이상 남자	1억원 이상	5천만원 이상
	40세이상 여자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40세이상 남자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5세 이상인 사람		5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상
위 각호 이외의 사람		2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상